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1. 5. 23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. 5. 3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1. 5. 6.
- 다. 상정일자 :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1. 5. 20)
상정, 심사, 보류
제161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1. 5. 2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임남순 도시경관과장)

가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,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, 사업추진협의체, 도시디자인 위원회 등 관련사항을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제1조 ~ 제2조) : 목적과 용어의 정의
- 2)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사업 관련 사항(제3조 ~ 제6조)
 - 도시디자인기본계획,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, 사업추진협의체,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
- 3)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제7조 ~ 제17조)
 -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심의 및 자문대상, 위원장의 직무, 회의, 위원의 제척 및 회피, 소위원회등에 관한 규정

다. 관련법령

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 - 서울시조례 제5001호, 2010.7.15 일부개정 -

3. 검토보고 (김은모 전문위원)

- 동 조례안은 2010.7.15.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2008. 9. 23. 제정·운영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 새로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에 맞춰 제정하려는 조례로 자치구 심의대상사업 규모를 “1억원 이하”에서 “5억원 이하”로 확대하고,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디자인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는 경우 및 서울시 우수 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며,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“별표” 「도시디자인 대상 시설물」을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 “별표 1”의 형식에 맞춰 변경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보면,
 - 1) 마포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도시디자인사업의 시행시 지역 경관의 보전·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
 - 2) 도시디자인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재정적 지원으로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지구 안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관련자에게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·보조 할 수 있도록 하며,
 - 3)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서는 도시디자인 심의 및 자문대상과 위원장과 위원의 제척·해촉 그리고 비밀준수 규정과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였음.
-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, 동 조례안은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」에 맞추어 우리 구 심의대상 사업규모 등을

정비하려는 것으로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미적 감각이 어우러진 도시디자인 마포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례로 판단됨.

- 다만, 본 제정 조례안 중 일부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면, 안 제12조제1항 “5명 이상”을 “5명 이상 15명 이하”로 하고, 향후 사업추진협의체 설치, 재정적 지원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 도시디자인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18조(시행규칙) “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”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 타 : 없음